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및 강화
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 성 자	이름	허선경
	담당부서 (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직급	식품위생주사
	국장	오규섭		연락처	0437192183
	과장	김영조		이메일	heosk@korea.kr

2026. 07. 21.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오규섭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및 강화		
	2.규제조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3.위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AI를 이용하여 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행정처분 규정만으로는 신종 AI 기술을 활용한 전문가 광고의 위법성에 대하여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불법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발 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집행자인 정부가 합리적으로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7.규제내용	○ AI를 이용하여 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AI를 이용한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한 부당 광고 행정처분 수준에 맞추어 실제 의사 등 전문가 활용한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정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 영업자	548,472개소
		이해관계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련협회, 소비자단체 등	
	9.규제목표	AI 가상의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소비환경 조성 및 합리적 선택권 보장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피규제 기업소상공인(비용) : 준법 영업자의 경우 추가적인 규제 준수 비용이나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위반 영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 중단 및 경제적 손실 발생 피규제 일반국민(편익) : AI 가상의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 뿐만 아니라 실제 전문가의 신뢰도를 악용한 부당 광고하는 행위까지 행정처분을 신설,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적·건강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Ⅱ. 개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 식품제조가공업 등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 하) (생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신설)					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현행					개정안				
거) (생략)					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5) (생략)					너) 현행 거)와 같음)				
6) (신설)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식품운반업 등					3. 식품운반업 등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 차) (생략)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 차) (생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신설)					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u>영업정지</u> 7일	<u>영업정지</u> 15일	<u>영업정지</u> 1개월	
카) (생략)					타) 현행 카)와				

현행					개정안				
5) (생략)					같음)				
6) (신설)					5) (현행과 같음)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에 관한 기본 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인 공지능시스 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 운 가상의 음 향, 이미지 또 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 서 의사·치과 의사·한의사· 수의사·약사· 한약사·대학교 수 또는 그 밖 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지 정·공인·추천 ·지도 또는 사 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 려가 있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AI를 이용하여 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행정처분 규정만으로는 신중 AI 기술을 활용한 전문가 광고의 위법성에 대하여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불법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적발 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집행자인 정부가 합리적으로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AI 가짜 의사를 활용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실제 의사 등 전문가 활용한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AI 가짜 의사를 활용한 부당광고의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 ※ (식품제조·가공업 등) 1차 영업정지 15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식품운반업 등)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선택근거) 소비자 기만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유사한 부당 광고 행위의 행정처분 수위와 균형을 맞추어 제도 간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 등을 악용한 광고를 엄격히 제재하

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협회, 관련부처, 유관기관 등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3. 규제목표

- AI 기술을 악용하여 부당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법률 집행의 실효성과 피규제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AI 가상의 전문가와 실제 전문가(사람)를 활용한 부당광고를 모두 동일한 제재 선상에 둌으로써 불공정 마케팅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 전문가 활용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을 정교하게 교란하여 건강 및 재산상 위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재하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규제 목적은 적당함
- 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예방 조치로서 하위법령에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필수적임
- 특히, AI 가상의 전문가 활용 부당광고의 제재 수위에 맞추어 실제 전문가를 이용한 부당광고도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이며, 이는 규제를 통해 달성되는 국민 건강 및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이 피규제자가 받는 사익에 비해 현저히 크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제사항이므로 중소기업에 한정한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은 영업자가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营业자를 예측하기 어려움
④ 대상 업종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는 영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고, 영업소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음 • 본 규제는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차등화 불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Act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의 추천이나 AI 기반 가짜 후기를 생성하는 행위를 기만적 행위로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음

○ 타법사례

- 「약사법」 법률 제21692호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⑦ 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 「화장품법」 법률 제21709호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료기기법」 법률 제21775호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본 규제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 가상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법률 개정 에 따른 하위규정(행정처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자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하여 가짜 전문가를 도용하는 신종 부당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처분 구조로 광잉 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였음
- 아울러, AI 가짜 전문가 광고에 대한 엄격한 처분 기준 신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실제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의 처분수위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허위 정보로부터 소비자 건강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산업 전반의 건전하고 공정한 표시·광고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AI 가짜 의사를 활용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피규제 기업소상공인(비용) : 준법 영업자의 경우 추가적인 규제 준수 비용이
나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위반 영업자의 경우 행정처
분에 따른 영업 중단 및 경제적 손실 발생
피규제 일반국민(편익) : AI 가상의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 뿐만 아니라 실제
전문가의 신뢰도를 악용한 부당 광고하는 행위까지 행정처분을 신설, 강화함
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적·건강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AI 가짜 의사를 활용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 영업자
활동제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로 인한 비용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준법 영업자의 경우 추가적인 규제 준수 비용이나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위반 영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 중단 및 경제적 손실 발생

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소비자
활동제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로 인한 편익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AI 가상의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 뿐만 아니라 실제 전문가의 신뢰도를 악용한 부당 광고하는 행위까지 행정처분을 신설,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적·건강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2.규제조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위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22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섭취가 급증하는 식품들에 대한 소아 중증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과 해외 규제** 동향 등이 지속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혼란 및 안전 사고 지대 발생 * 한국음식 단골 ‘들깨’, 소아 중증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어 (JTBC, '23.3.29) ** 美 ‘참깨’ 알레르기 식품 인정. 한국 상황은?(헬스조선, '23.1.4), 아몬드, 한국에서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아니다. 소비자 혼란 가중(매일경제, '23..2.3) ○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추가하여 알레르기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7.규제내용	○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 ○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원재료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문구 표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영업자</td><td>204,136개소</td></tr><tr><td>이해관계자</td><td>일반국민,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등</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영업자	204,136개소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영업자	204,136개소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 사고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701.3		7701.3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 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7701.3		1678.74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u>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u> I. 공통사항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u>잣</u>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u>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u> I. 공통사항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u>잣,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22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대한 마지막 개정(2018년)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현재, 국내 소비 트렌드 변화 및 유병률 증가 등을 반영한 규제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섭취가 급증하는 식품들에 대한 소아 중증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과 해외 규제** 동향 등이 지속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혼란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
 - * 한국음식 단골 ‘들깨’, 소아 중증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어(JTBC, ’ 23.3.29)
 - ** 美 ‘참깨’ 알레르기 식품 인정. 한국 상황은?(헬스조선, ’ 23.1.4), 아몬드, 한국에서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아니다. 소비자 혼란 가중(매일경제, ’ 23..2.3)
- 알레르기 정보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서 과학적 근거(유병률, 중증도) 및 국제조화 기준에 맞게 표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대 없이 현행 22종 유지
	내용	기존 22종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에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하도록 함
규제대안1	대안명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신규 4종을 추가하여 26종으로 운영
	내용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 4종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규제대안2	대안명	신규 4종에 대하여 식품업계 자율표시 권고
	내용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 4종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알레르기 주의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홍보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포장지 인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력이나 예산 소요가 없음	·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 등 알레르기 유발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정보 부재로 건강상 위해 가능성이 지속됨
규제대안1	· 위해 우려가 높은 4종 원재료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레르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포장지 인쇄, 원료관리 시스템 수정 등 업계에 초기 전환비용의 부담이 발생함 · 신규 4종 원재료에 대한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하기 위한 행정력이 추가 요구됨
규제대안2	·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식품업계가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보되고 규제 저항이 적음	· 포장지 인쇄 비용 등으로 인해 중소, 영세업체의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음 ·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임에도 제품별 표시 여부가 상이하여 소비자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CODEX 식품표시 담당	국제적 식품알레르기 표시제도 동향 및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확대에 대한 국제적 타당성 검토 (‘25.7.21, FAO 로마 본부)	참깨 등 의무표시에 동의	
의학, 식품, 법률, 산업계, 소비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확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법적 정합성, 정책적 실행	참깨, 들깨, 견과류 의무표시에	

	가능성 등 논의 (‘25.9.24, 서울역 KTX 회의실)	동의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22종)은 지난 2018년 마지막 개정 이후 약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국내 소비 형태의 변화와 알레르기 유발률 증가 추세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민 식생활 환경과 과학적 통계를 반영한 규제 재평가 및 합리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한국인의 주요 섭취 식품인 참깨, 들깨 등은 소아 중증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시 의무가 없어 법적 의무화를 통한 선제적 안전 확보가 시급함
- 미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참깨 등을 알레르기 식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글로벌 기준과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수입식품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알레르기 표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로서, 유병률과 중증도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무표시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규제대안1을 선택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규제목표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을 과학적 근거(유병률, 중증도) 및 국제조화 기준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식품 알레르기는 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위해 요인으로서 알레르기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정당한 규제 목적임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식품에 의무 표시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단계에서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
- 본 규제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본질적인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알레르기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국민 건강위해와 의료비 고정 지출, 사회적 생산성 손실 비용을 감안할 때 규제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피규제자의 이행비용보다 큼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제사항이므로 중소기업에 한정한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제품의 원재료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규제 대상의 사업자 수를 예측하기 어려움
④ 대상 업종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⑤ 예비분석내용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소비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규제로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차등화 불필요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본 규제는 알레르기 질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요구되므로 일몰 미설정이 타당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국가	식품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Code x	◆ 총 8개 품목 (의무)①글루텐 함유 곡물(밀, 호밀, 보리, 호라산, 스펠트), ②갑각류, ③난류, ④어류, ⑤땅콩, ⑥우유, ⑦견과류(아몬드, 캐슈넛, 헤이즐넛, 피칸, 피스타치오, 호두), ⑧참깨 (권장)①메밀, ②셀러리, ③귀리, ④루피니콩, ⑤겨자, ⑥대두, ⑦견과류(브라질넛, 마카다미아, 잣)
일본	◆ 총 28개 품목(의무 8, 권장 20) (의무)①새우, ②게, ③호두, ④밀, ⑤메밀, ⑥알, ⑦유, ⑧땅콩 (권장)①아몬드, ②전복, ③오징어, ④연어알, ⑤오렌지, ⑥캐슈넛트, ⑦키위, ⑧쇠고기, ⑨참깨, ⑩연어, ⑪고등어, ⑫대두, ⑬닭고기, ⑭바나나, ⑮돼지고기, ⑯송이버섯, ⑰복숭아, ⑱참마, ⑲사과, ⑳젤라틴
EU	◆ 총 14개 품목 ①글루텐 함유 곡물, ②갑각류, ③난류, ④어류, ⑤땅콩, ⑥대두, ⑦우유, ⑧견과류, ⑨셀러리, ⑩겨자, ⑪참깨, ⑫이산화황 및 아황산염(10mg/kg 또는 10 mg/l 이상), ⑬루핀, ⑭연체류
영국	◆ 총 14개 품목 ①셀러리, ②글루텐 함유 곡물, ③갑각류, ④알류, ⑤어류, ⑥루핀, ⑦유, ⑧연체류, ⑨겨자, ⑩견과류, ⑪땅콩, ⑫참깨, ⑬대두, ⑭이산화황 및 아황산염(10 mg/kg 이상)
미국	◆ 총 9개 품목 ①유, ②달걀, ③생선, ④조개 및 갑각류, ⑤견과류, ⑥밀, ⑦땅콩, ⑧대두, ⑨참깨 ①~⑨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원료
캐나다	◆ 총 14개 품목 ① 견과류(아몬드, 브라질넛트, 캐슈넛, 개암, 마카다미아넛트,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②땅콩, ③참깨, ④밀, ⑤트리티케일, ⑥알류, ⑦우유, ⑧대두, ⑨갑각류, ⑩연체동물, ⑪어류, ⑫겨자씨, ⑬글루텐 함유 곡물(보리, 귀리, 호밀), ⑭첨가된 아황산염(10 mg/kg 이상)
호주/뉴질랜드	◆ 총 13개 품목 ①아황산염(10 mg/kg 이상), ②글루텐 함유 곡물(보리, 귀리, 호밀), ③밀, ④견과류(아몬드, 브라질넛트, 캐슈넛, 개암, 마카다미아,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브라질넛), ⑤갑각류, ⑥알류, ⑦어류, ⑧루핀, ⑨유, ⑩연체동물, ⑪땅콩, ⑫참깨, ⑬대두
중국	◆ 총 8개 품목 ①글루텐 함유 곡물, ②갑각류, ③어류, ④알류, ⑤땅콩, ⑥대두, ⑦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⑧견과 및 그 씨앗류

○ 타법사례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신규 4종을 추가하여 26종으로 운영>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701.3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신규 4종을 추가하여 26종으로 운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701.3			7,701.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7,701.3			7,701.3
기업순비용		7,701.3		연간균등순비용	1,678.74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개정안은 기존 22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4종(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을 추가하는 규제로서, 이미 영업자들은 22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를 운영중이며 시행일(2028.1.1.)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포장지 재고 소진 및 표시 변경을 차없이 준비할 수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식품등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본 개정안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투입이나 행정비용의 증액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2025년 2월 ~ 11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자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본 개정안은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알레르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규제임
- 본 규제는 2028년 1월 1일 시행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업자가 기존 동판 및 포장지 재고를 자연 소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량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레르기 환자의 오섭취를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후 리스크 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익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알레르기 표시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피규제자의 이행 비용과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라는 공익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비례성의 원칙을 완전히 충족하였음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신규 4종을 추가하여 26종으로 운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701.3			7,701.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7,701.3			7,701.3
기업순비용		7,701.3		연간균등순비용	1,678.74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신규 4종을 추가하여 26종으로 운영>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넛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영업자
활동제목	설비 교체에 따른 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7,701,300,00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동판 제작·교체 비용(원) × 규제대상 제품 수(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넛을 원재료로 하는 품목 수(2026.6.30.기준, 출처 : 식품통합행정시스템))(300000*25671)
근거설명	○ 포장재 동판 교체비용 - 포장재 동판 교체비용은 표시 및 광고금지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를 교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임 - 포장재 교체비용의 경우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일부 업체에 인터뷰(26.6.)한 결과 세부적인 비용 산출은 어려우나 동판(1도) 비용은 30만원이 일반적이며 용기포장과 관련된 것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동일하게 적용됨 - 알레르기 4종을 추가적으로 표시하여 포장재를 교체해야 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2026.6.30. 기준 알레르기 4종이 포함된 품목은 총 25,617품목으로 이를 적용하여 비용을 도출함 - 비용 = [동판 제작·교체 비용(원) × 규제대상 제품 수] = 300,000원 × 25,617개 = 7,701,300,000원 - 이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대에 따른 포장재 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109,600,000원임 - 다만, 통상적으로 포장재 변경은 의무 표시사항 변경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량 증가 목적 등으로 포장재 디자인을 변경해 교체주기가 6개월로 짧으므로 해당 규제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포장지 폐기 비용 역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포장사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이상 부여(시행일 2028.1.1.)하여 기존 포장지의 폐기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넛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표시, 광고
----------	------------------------------------

명	하는 영업자
활동제목	표시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추가로 표시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생산했던 제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충분히 설정해 둠으로써 표시 변경 전 생산된 제품의 관리 또는 처분에 따른 규제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소비자
활동제목	국민 건강 위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 비용 절감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정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제공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자의 오섭취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고,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안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정부
활동제목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확대에 대한 홍보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생산자, 관련 기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비용이 발생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비용은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